

예산총칙

2008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0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28,481,846	12,854,455
일반회계	422,862,701	12,685,881
일반회계	422,862,701	12,685,881
기타특별회계	5,619,145	168,574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3,833,778	115,013
주택사업특별회계	240,910	7,227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709,680	21,290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280,545	8,416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554,232	16,627

제 2 조 2008년도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

제 3 조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"사고이월사업조서"와 같다

제 4 조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929,253천원으로 한다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